



의안번호	제40호
회의연월일	2023. 5. 15. (제515회 회의)

심의
의결
사항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출부서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제출연월일	2023. 05. 02.

인사운영계장, 인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

1. 개정이유

역량 있는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 법령체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령」과 동일하게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입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시험승진 비율 개선(안 제4조, 제25조)

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시 심사·시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비율을 심사승진은 70%로, 시험승진은 30%로 조정

나. 심사승진 시 경력평정 반영기간 단축(안 제9조)

기본경력 = '최저근무연수+1년(순경·경장은+6월)'으로, 초과경력 = 1년 내외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승진 소요기간 단축

구분	순경→경장	경장→경사	경사→경위	경위→경감	경감→경정	경정→총경	총경→경무관
현행(기본+초과)	2년(1.6+0.6)	3년(2+1)	4.6년(3+1.6)	7년(3+4)	9년(4+5)	9년(4+5)	4년(3+1)
개선(기본+초과)	2년(1.6+0.6)	2년(1.6+0.6)	3년(2+1)	5년(2+3)	7년(3+4)	7년(3+4)	"

다. 시험승진 시 근무성적 평정점 반영기간 단축(안 제33조)

최저근무연수 경과 시 시험승진이 가능하도록 시험승진 시 근무성적 평정 반영기간을 최저근무연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구분	순경→경장	경장→경사	경사→경위	경위→경감	경감→경정
시험승진 근무평정 반영기간	기 준	최근 1년		최근 2년	
	개선안	최근 1년			최근 2년

라. 경정 특별승진 제도 도입(안 제4조, 안 제38조)

‘중요 범인검거 및 인명구조’ 유공에 대하여 경정으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경정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 이내로 도입

마.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입방식 개선(안 제6조)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직위해제로 인해 새로운 제한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시작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계산되도록 개선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감”을 “따라 경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0퍼센트 이내”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50퍼센트씩을 각각”을 “70퍼센트(경장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100퍼센트)를”로, “인원과”를 “인원으로 하고, 나머지 30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인원 중 어느 한쪽의 예정 인원이 50퍼센트를 초과하게”를 “인원의 비율을 본문과 다르게”로 한다.

1. 경정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퍼센트 이내

2.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0퍼센트 이내

제6조제2항 중 “휴직하는”을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총경:”을 “총경·경정·경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라목) 중 “경장:”을 “경위·경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마목) 중 “순경:”을 “경장·순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5년간”을 “4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4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년 6개월간”을 “1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목(종전의 바목) 중 “순경:”을 “경장·순경:”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인원은 각각 승진임용 인원의 50퍼센트”를 “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하고, 나머지 3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경장”을 “경위”로, “경사 이상”을 “경감인”으로 한다.

제38조제4호 중 “경감”을 “경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시험 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4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때는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4조제4항제1호 본문을 적용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제4조제4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 중 “70퍼센트(경장 계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며, “나머지 30퍼센트”를 “나머지 40퍼센트”로 한다.

②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할 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하고, 나머지 3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를 “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하고, 나머지 4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로 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4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제4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 임용 예정 인원의 30퍼센트 이 내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 37조제1항제1호·제4호 및 같 은 조 제3항제1호·제6호에 해 당하는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 ----- 따라 규정 ----- ----- 정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 . ----- ----- -----.
<신설>	1. 규정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 정 인원은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퍼센 트 이내
	2.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 원의 30퍼센트 이내
④ 「경찰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에	④ ----- -----

따라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하는 경우에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1.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50퍼센트씩을 각각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어느 한쪽의 예정 인원이 50퍼센트를 초과하게 정할 수 있다.

2. (생략)

⑤ · ⑥ (생략)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
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illegible]

1. -----

---- 70퍼센트(경장 계급으로
의 승진의 경우에는 100퍼센
트)를 ----- 인원으로 하
고, 나머지 30퍼센트를 -----
--.

----- 인원의 비율을 본문
과 다르게 -----
-----.

2.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현행
과 같음)

② —————
—————
—————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 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 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 람이 <u>휴직하는</u>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 ----- ----- ---- <u>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u> <u>을 받는</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경력 평정) ①·② (생 략)	제9조(경력 평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력 평정은 기본경력과 초 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계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 에 포함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③ ----- ----- ----- ----- -----.
1. 기본경력	1. -----
가. <u>총경</u> : 평정기준일부터 최 근 3년간	가. <u>총경·경정·경감</u> : ----- -----
나. <u>경정·경감</u> : 평정기준일 부터 최근 4년간	<삭 제>
다. <u>경위·경사</u> : 평정기준일 부터 최근 3년간	<삭 제>
라. <u>경장</u> : 평정기준일부터 최 근 2년간	나. <u>경위·경사</u> : ----- -
마. <u>순경</u> : 평정기준일부터 최	다. <u>경장·순경</u> : -----

근 1년 6개월간	-
2. 초과경력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경정·경감</u> : 기본경력 전 <u>5년간</u>	나. ----- <u>4년간</u>
다. <u>경위</u> : 기본경력 전 <u>4년간</u>	다. ----- <u>3년간</u>
라. <u>경사</u> : 기본경력 전 <u>1년 6</u> <u>개월간</u>	라. ----- <u>1년간</u>
마. <u>경장</u> : 기본경력 전 1년간	<삭 제>
바. <u>순경</u> : 기본경력 전 6개월 간	마. <u>경장·순경</u>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 승진임용 인원은 각각 승진임용 인원의 5 0퍼센트로 한다.	제25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 ----- ----- ----- <u>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후</u> <u>보자로 하고, 나머지 30퍼센트</u> <u>를 시험승진후보자</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 ③ (생 략)	제33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계급 에서의 근무성적은 <u>경장</u>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	④ ----- ----- <u>경위</u> ----- -----

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산정하며, <u>경사 이상</u>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다음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 제38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37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 3. (생략) 4.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u>경감</u>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5. (생략)	----- ----- ----- <u>경감인</u> ----- ----- ----- ----- ----- ----- --- 제38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경정</u> ----- ----- 5.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1239